

공 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624호

거여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

관리처분계획(환지계획)변경 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470호('73.12.1)로 구역지정, 건설부 고시 제140호('76.8.26.)로 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호('76.9.4.)로 사업시행인가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('84.2.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10호('84.4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147호('85.3.6.)로 3차에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(환지예정지)되고 송파구 공고 제40호('00.6.7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(환지예정지)된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,

2. 확정측량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(환지계획)을 변경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, 「도시개발법」 제29조 제3항에 의거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3.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

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이 공고로써 갈음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☎02-2147-29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5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17. 5. 4. ~ 2017. 5. 19. (15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(6층)

다. 구역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거여 제2구역	송파구 거여동 181, 202, 220번지 일대	총 72,366.8	자력재개발

라. 사업기간 : 1976. 9. 4. ~ 2017. 12. 31.

마. 사업의 시행자 : 송파구청장 (송파구 올림픽로 326, 신천동)

바. 관리처분계획(환지계획) 변경내용

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 사항
면적(㎡)	72,366.8	71,667.5	· 도로면적의 변경발생 (확정측량반영)

사. 관계도서 :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비치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631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제1호 중 “제2조제11호”를 “제2조제10호”로 제2호 중 “제 10조제1호”를 “제10조제1항”으로 잘못 표기된 인용 조문 변경
- 나. 제7조 중 “제6조제2항”을 “제5조제2항”으로 잘못 표기된 인용 조문 변경

경

- 다.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(대상 및 이용) 이용 대상을 산모로 명기하여 개정
- 라.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(대상 및 이용), 제12조(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)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 관련항의 신설
- 마.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호(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) ‘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인 사람’ 기준을 ‘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’으로 개정
- 바.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(변상 책임 등)에 민법 기준 적용
- 사. [별표 1]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은 제 12조 관련으로 잘못 표기된 문구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 : 건강증진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(전화 : 2147-3471, FAX : 2147-389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633호

부 의 안 건 공 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구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조례	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-636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고자 함.
- 나. 현재 출산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출산축하금은 둘째이상 자녀 출산가정에만 국한되어 있어, 첫째를 출산한 가정에게도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지급내용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축하금 및 안심보험 지원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)
- 나. 첫째 자녀 출산가정 출산출하용품 지급 내용 신설(안 제2조제6조, 제3조제3항, 제4조제2항, 제6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(참조 : 여성보육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(전화: 2147-2788, FAX: 2147-38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-638호

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에 따른 자치법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에 따른 자치법규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송파구 시설(평생학습원, 여성문화회관, 아기사랑나눔센터)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(별표2)

- 감면비율 50%란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네 자녀 이상 가정 신설

○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(별표2)

- 감면비율 50%란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4자녀 이상 가정 신설

○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 제7조)

- 연회비 감면 조항에 다자녀가정 감면 신설(셋째자녀 가정 50%, 넷째 자녀 이상 가정 100%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5월 24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(참조: 여성보육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(전화: 2147-2788, FAX: 2147-38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7-639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「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수탁자의 범위 확대 (안 제9조 제3항 각 호)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 : 여성보육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(전화 : 2147-2789, FAX : 2147-38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(www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